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준비행위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96누 9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일당일을 받아 일하여 왔으므로 원고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원고가 망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 망인을 연희동에 있는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망인이 스스로 동행을 고집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왔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미장작업 개시일은 1994. 9. 8.로써 작업개시일 전날에 작업도구를 시공자 모르게 현장 외부에 옮겨 놓는 정도의 일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준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과 원고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책임자로 고용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

장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2 또는 건축주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망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어 망인을 연희동에 있는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망인이 스스로 동행을 고집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까지 따라 왔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보면, 그 중 갑 제6호증의 7(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4. 9. 9. "1994. 9. 7. 서울 은평구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날부터 미장작업을 맡아 일하게 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도구를 옮겨 놓기 위하여 용달차를 임차하여 작업도구를 싣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

도구들을 신축건물 밖에 내려 놓았는데, 인조석 물같이 인부로써 자신에게 고용되어 같은 날 저녁까지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 하였던 망인이 위 용달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따라 왔다가 신축건물 내부의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에 자신이 망인을 부축하여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다쳤으니 하루 쉬고 모래부터 일하러 나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인정사실과는 반대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 망인이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계속하여 일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을 제5호증의 2(원고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구산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도 데려가지 아니하려고 하였는데 망인이 동행하기를 고집하며 용달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현장에 함께 가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증전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1, 3, 4(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문답서, 그 작성의 확인서 및 경위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모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소외 2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갑 제6호증의 8(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용달차 운전사인 소외 4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없이 단지 자신과 원고만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달차에 싣고 온 작업도구들을 신축건물 밖에 옮겨 놓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사현장에서 여러가지

진술을 심리한 연후가 아니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없는 원고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소외 2의 진술 등을 쉽게 믿어 원심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업무상의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히 확정된 바와 같이 위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의 노무제공만을 도급받아 그 중 미장공사를 원고에게 맡겨 작업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면 망인은 원고의 피용인으로써, 소외 2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의 행위는 업무 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사업장이 소외 2가 사업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면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원심의 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